



신청절차 일반 및 공통 준비사항

- 가. 자격승인 절차 일반
- 나. 설립인가 절차 일반
- 다. 수수료
- 라. 서류에 대한 인증 및 공증방법
- 마. 서류 작성언어 및 작성방법

가. 자격승인 절차 일반



1.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절차 일반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자격승인은 법무부에서,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은 향후 정식심사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용하는 사전 심사 절차입니다.
- 외국법자문사 예비심사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은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보내셔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정식심사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제법무과에 출석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직접 읽고 서명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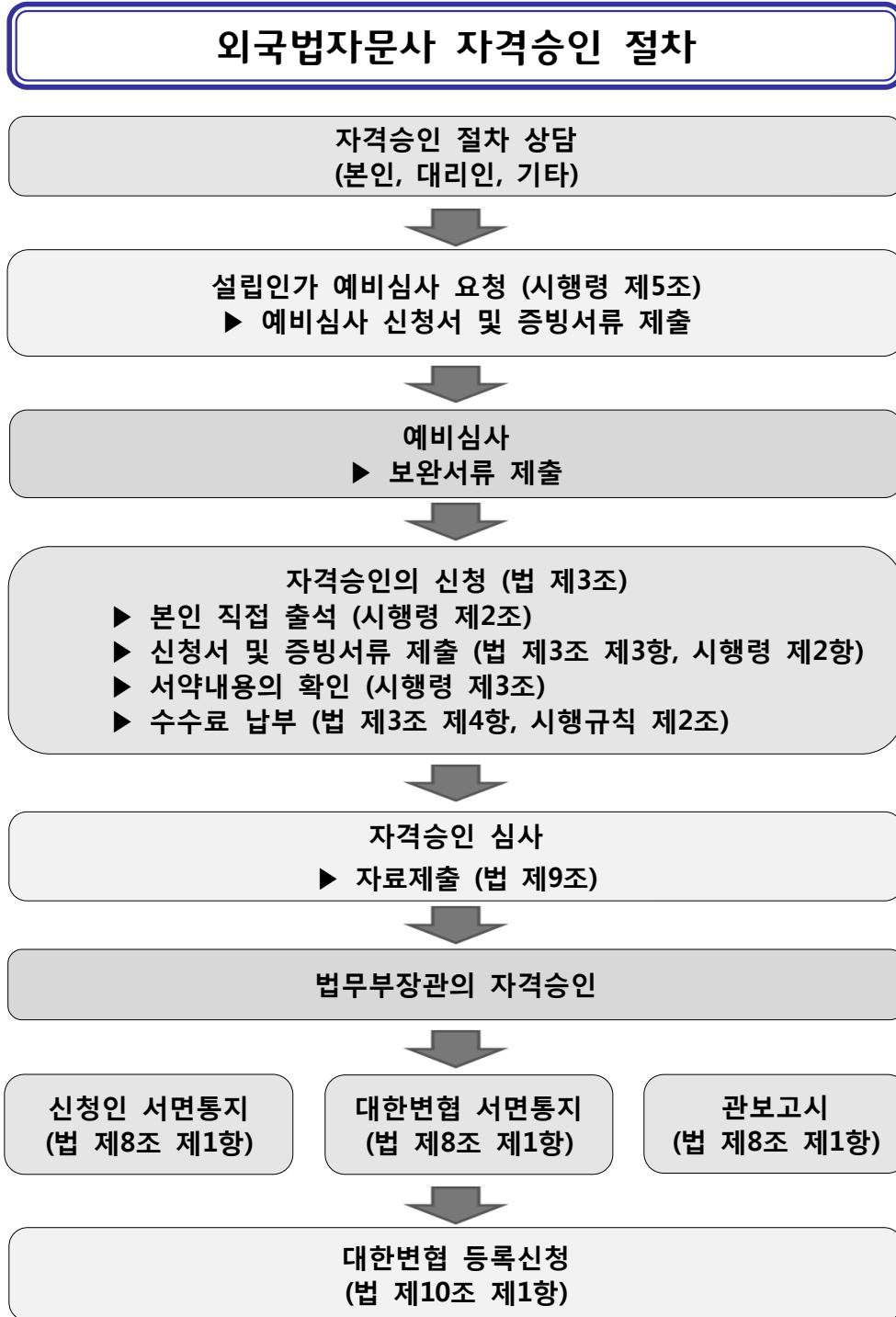
* 서약서 서식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준비하므로,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비심사와 정식심사용 서류는 모두 개별 항목별로 분류된 PDF 파일을 준비하여 서류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식심사가 통과되면 교부받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증」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절차 개요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대표자와 소속변호사 동시 신청

◆ 문의사항

- 향후 설립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와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근무할 외국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동시에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사항

- 향후 설립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와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근무할 외국변호사 각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시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 심사를 통과할 때는 「외국법자문사법」상의 업무수행 방식 준수가 가능하도록 고용관계가 명확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연하면, 대표자와 소속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승인 심사 통과를 전제로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또한, 대표자의 자격승인은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사실상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자격승인시에는 업무수행 방식이 이미 명확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사항 변경시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등록이후에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6항에서 ‘등록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4조에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 협회에 등록사항 변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는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4조[신고] ① 외국법자문사가 제6조 제2항에 정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변동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나. 설립인가 절차 일반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절차 일반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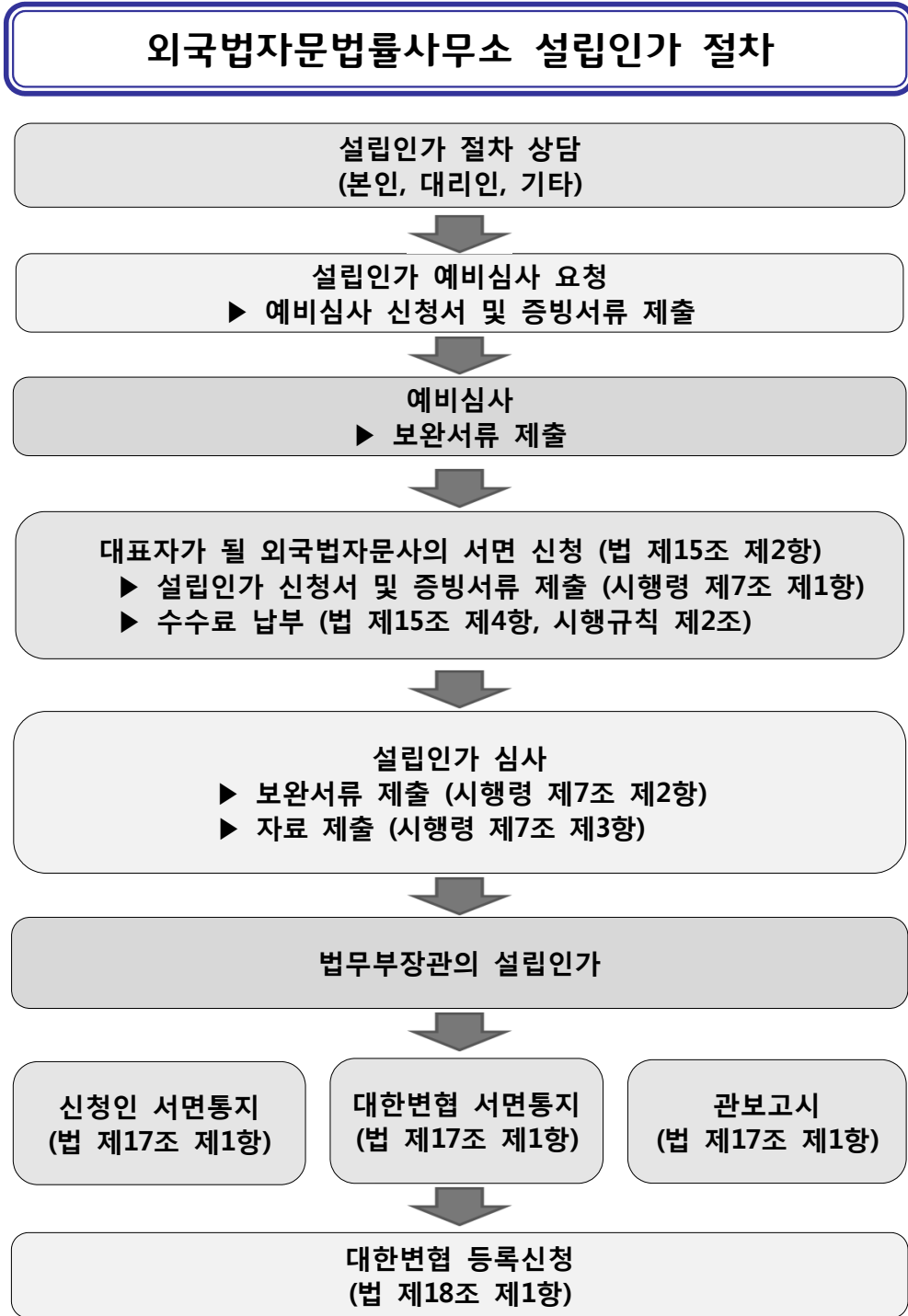
- 외국로펌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고 등록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설립인가는 법무부에서,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 절차도 예비심사와 정식심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심사 과정은 향후 정식심사시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용하는 사전 심사절차입니다.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은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보내셔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정식심사의 경우에도 신청방법은 예비심사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나, 반드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예비심사와 정식심사용 서류는 모두 개별 항목별로 분류된 PDF 파일을 준비하여 서류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식심사가 통과되면 교부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증」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설립인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절차 개요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 설립인가 신청 이후 대표자 변경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사무소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인과 심사기관 간의 자유로운 협의, 서류의 보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법자문사법」에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설립인가 신청은 외국법자문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대표자의 경우에도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정식심사 단계에서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정식심사 신청은 대표자로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 신청인과 신청행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이 철회되고 새롭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 수수료



1. 수수료 납부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시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등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신청시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시 소요되는 실비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4항, 제15조 제4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의 경우에는 한화 25만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한화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격승인과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시에 법무부에서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와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 후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무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송부방법 ①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우편번호 13809
- ② 팩스 : +82-(0)2-2110-0327
- ③ 스캔 후 이메일 : ildhd@moj.go.kr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설립신청 등)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2. 예비심사시 수수료 납부 여부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와 정식심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를 위해 각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정식심사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각각의 예비심사시에는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외국에서 심사 수수료 납부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미국 등 외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가요.

◆ 답변사항

- 법무부의 수수료 납부 절차에 따라 수수료만 납부하실 수 있다면 외국에서도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는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금액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무부가 발행하는 고지서를 외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고 위 고지서를 소지하고 지정 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면 신청인이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해도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라. 서류에 대한 인증 및 공증방법



1. 인증 또는 공증이 필요한 서류

◆ 문의사항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과정에서 인증 또는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실무상으로는 '번역 인증'을 의미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해 고시된 「자격승인심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신청자의 직무 경력에 관한 진술서», 및 「설립인가 신청 로펌 본점사무소 대표 진술서」는 각 서식 말미에 진술자가 진술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의결에 관한 증빙서류 및 민·상사책임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진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사본의 경우 인증된 사본이 아닌 단순 복사본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2. 진술서 공증방법

◆ 문의사항

- 「자격승인심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신청자의 직무 경력에 관한 진술서」, 「설립인가 신청 로펌 본점사무소 대표의 진술서」에 공증을 받을 때 반드시 한국법상 인정되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위와 같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 말미에는 작성자의 서명 및 이에 대한 공증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서에 요구되는 공증은 해당 진술서가 진술서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합니다.
- 사서증서의 인증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진술서가 국내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법」에 따라 대한민국 공증인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방법(영문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 진술서가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① 재외공관에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방법, 또는 ② 현지국의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
- 위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 상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서 유효하게 공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위와 같이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란,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1965. 1. 24. 발효, 우리나라의 경우 2007. 7. 14. 발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문서확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가능 합니다.(93페이지 이하 참조)

관련 조문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 외국 공증 서식의 예시 (미국 뉴욕주 뉴욕카운티)

STATE OF NEW YORK)
) ss. :
 COUNTY OF NEW YORK)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day
 of , 20 .



PLACE YOUR NAME
 Notary Public, State of New York
 No. _____
 Qualified in New York County
 Commission Expires Month Date, Year

State of New York }
 County of New York } ss. : _____ Form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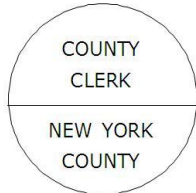
I, _____, County Clerk and Clerk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in and for the County of New York, a Court of Record, having by law a seal, DO HEREBY CERTIFY pursuant to the Executive Law of the State of New York, that,

whose name is subscribed to the annexed affidavit, deposition,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or proof, was at the time of taking the same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State of New York duly commissioned, sworn and qualified to act as such; that pursuant to law, a commission or a certificate of his official character, with his autograph signature has been filed in my office; that at the time of taking such proof, acknowledgment or oath, he was duly authorized to take the same; that I am well acquainted with the handwriting of such NOTARY PUBLIC or have compared the signature on the annexed instrument with his autograph signature deposited in my office, and I believe that such signature is genuine.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affixed my official seal this _____.

Fee Paid \$3.00

_____ County Clerk, and Clerk of the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 국내 사서 인증 예시(앞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h1>인 증 서</h1>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국내 사서 인증 예시(뒷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명 날인하였다.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소 속				
소재지 표시				
공증인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소 속			
소재지 표시			
공증인 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국내 영문 사서 인증 예시(앞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2.5>

Registered No. -

NOTARIAL CERTIFICATE

NAME & ADDRESS
OF THE OFFIC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국내 영문 사서 인증 예시(뒷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 증서에 자기가 명 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and admitted his(her) subscription to the attached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day of , . . . at this office	
공증사무소 명칭				Name of the office	
소 속				Belong to	
소재지 표시				Address of the office	
공증인				①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	
				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 , . . . under Law No.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attorney-in-fact of appeared before		
에 기재된			me and admitted said principal's		
의 대리인			subscription to the attached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년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월			day of . . . at this office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Name of the office		
소 속			Belong to		
소재지 표시			Address of the office		
공증인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		
①					
			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		
			, . . . under		
			Law No.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재외공관 사서 인증 예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서
NOTARIAL CERTIFICATE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12.29>

인 증 문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에				
기재된			personally(attorney-in-fact of)		
(의 대리인)			appeared before me and admitted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			his(her) (said principal's)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subscription to the attached.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day of at this office.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_____		
직위 :					
재외공관 명칭 :					
소재지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3. 증빙서류의 인증된 사본 제출

◆ 문의사항

- 사문서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시 어떻게 인증을 받는가요.

◆ 답변사항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빙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의 인증이란 공증사무소, 재외공관 등에서 해당 문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 부합함을 인정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의 사본이 실존하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사본의 인증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신청인이 국내에 있으면 「공증인법」에 따라 대한민국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는 방법
- (2)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또는 ② 현지국의 공증인에 의한 인증 후 아포스티유 협약상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는 방법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부착된 공증문서는 재외공관의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증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구체적인 예

- 미국 변호사가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의 원본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증된 사본을 준비하려는 경우, 국내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인증된 사본으로 인정됩니다.
- 프랑스 변호사가 프랑스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변호사자격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유효한 자격 유지 및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의 원본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인증된 사본을 준비하려는 경우

- ①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본 인증 또는
- ② 프랑스 공증인으로부터 사본 인증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인증된 사본으로 인정됩니다.

※ 상기 답변은 사문서임을 전제로 하며,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내야 합니다.

관련조문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 국내 사본 인증 예시(앞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인 증 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국내 사본 인증 예시(뒷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2.5>

사무소 명칭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등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소 속		
소재지 표시		
공증인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서
NOTARIAL CERTIFICATE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2.29>

인 증 문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등본(사본)은 원본과			As a result of checking at my office, I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			have found that the attached		
			a(certified) copy exactly corresponds		
			with the original.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day of		
년 월 일			at this office.		
성명 :			(서명 또는 인) _____		
직위 :					
재외공관 명칭 :					
소재지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4. 공증된 한글 번역본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3항의 ‘공증된 한글 번역본’이란 무엇 인가요.

◆ 답변사항

- ‘공증된 한글 번역본’이란 번역인으로 하여금 번역문의 번역이 원문과 동일함을 서약하도록 하고 이를 공증인이 인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 번역 인증은 번역자가 ‘내가 번역하였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것으로 번역의 정확성(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며 번역자가 번역하였다는 사실(형식의 진정성립)만 담보하는 것이므로 결국 번역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진술서를 한글 이외의 언어로 작성한 경우 진술인은 진술서 원어본에 대하여 진술인이 거주하는 곳의 절차에 따른 공증을 받은 다음 공증인 또는 동등자격자의 공증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첨부하여 이를 모두 한글로 번역을 한 후 한글본에 대해 별도의 번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진술서 말미에서 요구하는 공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진술서 공증은 작성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이하 참조)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5. 공증된 한글 번역본 작성 방법

◆ 문의사항

- 위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가요.

◆ 답변사항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경우에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해 대한민국 내 공증인을 통해 번역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그 번역자가 거주하는 곳의 재외 공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관련조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대리인 등의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후 그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 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국내 번역 인증 예시(앞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2.5>

Registered No. -

NOTARIAL CERTIFICATE

NAME & ADDRESS
OF THE OFFIC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국내 번역 인증 예시(뒷면)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2.5>

<p>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p> <p>서약인 ①</p>	<p>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p> <p>_____ /</p> <p>Signature</p>
<p>등부 년 제 호 인 증</p> <p>위 은</p> <p>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p> <p>. . .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 한다.</p> <p>공증사무소 명칭</p> <p>소 속</p> <p>소재지 표시</p> <p>공증인 ①</p>	<p>Registered No. -</p> <p>Notarial Certificate</p> <p>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her) name.</p> <p>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p> <p>day of ,</p> <p>at this office</p> <p>Name of the office</p> <p>Belong to</p> <p>Address of the office</p> <p>(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p> <p>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p> <p>, . . .</p> <p>under Law No.</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6. 외국 공문서 제출시 문서의 진정성 확인

◆ 문의사항

- 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나 「변호사자격증」 등의 증빙 서류 원본을 제출할 경우 심사자는 문서의 진정성 확인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답변사항

-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할 경우, 번역 인증을 제외한 다른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인 공문서 및 사문서의 진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심사자가 직접 발급기관 담당자 등에게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 경우 신청인이 발급받은 증빙서류가 공문서라면 ① 해당 공문서 발행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문서확인을 받거나, ②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경찰청 발행의 「범죄경력조회」, 법원 발행의 「변호사자격증」 등은 외국 공문서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참고로 공문서는 인증된 사본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조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확 인 서
LETTER OF CONFIRMATION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7.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문의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다음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1)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확인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2) 증빙서류를 외국에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공증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자격승인심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신청자의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설립인가 신청 로펌 본점사무소 대표의 진술서」를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작성하고 공증 받은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의결에 관한 증빙서류 및 민·상사책임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 국내 공증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문의사항

- 사문서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사항

- 사문서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증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작성된 사문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 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 나. 행정문서
-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나.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Brunei Darussalam	Burundi
Chile	China, People's Republic of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Cape Verde	Colombia
Cook Islands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stonia
El Salvador	Finland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rance
Fiji	Georgia
Germany	Greece
Grenada	Guatemala
Hungary	Honduras
Iceland	Ind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orea, Republic of
Kosovo	Kyrgyzst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Malta	Mauritius
Mexico	Monaco
Montenegro	Morocco
Malawi	Marshall Islands
Mongol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Namibia	Nicaragua
Niue	Oman
Panama	Paraguay
Peru	Poland
Portugal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eychelles	Swaziland
Turkey	Tajikistan
Tonga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anuatu	

※ 중국의 경우 : 홍콩, 마카오만 해당



9. 한 국가에서 각종 증빙서류 일괄 공증

◆ 문의사항

-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여 각 국가별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인증된 사본'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려 할 때, 각 발급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 국가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 답변사항

-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사본인증 및 번역 인증으로 충분합니다.
 - ※ 참고로 공문서는 인증된 사본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증된 사본'의 작성과 '공증된 한글 번역본'의 작성을 달리 봐야 합니다.
 - 사본 인증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또는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인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공문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본에 대한 인증이 불가능),
 - 번역 인증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그 번역자가 거주하는 곳의 재외공관에서 번역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0. 서류의 작성자 또는 제출자 소속로펌과 동일한 로펌에서 공증이 가능한지 여부

◆ 문의사항

- 서류의 작성자 또는 제출자가 소속된 로펌과 동일한 로펌에서



공증을 받아도 되는가요.

◆ 답변사항

- 서류의 작성자가 소속된 로펌과 동일한 로펌에서 해당 서류의 공증을 받는 것은 공증의 객관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속로펌과 다른 로펌 또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로펌의 경우에도 「공증인법」 제21조 제4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속로펌과 다른 로펌 또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법정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언자와 동일한 로펌에 소속한 변호사가 해당 선언을 공증한다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선언자는 본인이 소속한 로펌과 동일한 로펌에 소속하지 않은 변호사 앞에서 선언하기를 권장합니다.

관련조문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마. 서류 작성언어 및 작성방법



1. 국문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 문의사항

- 「신청자의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및 「설립인가 신청 로펌 본점 사무소 대표 진술서」 등 각종 진술서의 경우, 한글로 작성할 수 있는 진술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국문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문본을 직접 작성한 후 한글 번역을 하여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이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술한 '공증된 한글 번역본(85페이지 이하)'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작성방법(87페이지 이하)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답변 번역이 필요한 부분

◆ 문의사항

- 위와 같이 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번역은 답변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가요.

◆ 답변사항

- 진술서의 질문사항은 부동문자이므로 별도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각종 진술서의 영문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진술서 작성자는 영문서식에 영어로 답변을 기재하고, 그 답변내용만 한글로 번역하여 국문서식에 기재한 후 국문본 전체에 대해서 번역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이 경우 국문본이 영문본에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3. 신청서를 영어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 문의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정식)심사 신청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예비(정식)심사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정식)심사 신청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예비(정식)심사 신청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는 한글로 된 신청서만 존재합니다.
- 신청인이 전혀 한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란에 영어자필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4. 영문본 번역시 오류의 책임

◆ 문의사항

- 영문본과 함께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 한글 번역본에 번역의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한글 번역본은 국문본처럼 취급되고, 국문본이 공식 신청서류로 간주되므로 결국 한글 번역본을 기초로 심사는 진행됩니다.
- 결국, 영문본과 공증된 한글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번역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번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문본 작성 가능시 영문본 제출 여부

◆ **문의사항**

- 진술자가 국문본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국문본만 제출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국문본 외에 영문본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국문본이 공식 신청서류이고 영문본은 작성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국문본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영문본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아가, 신청인이 별도로 영문본을 제출하고 싶다면 영문본 제출도 가능하나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되므로 국문본의 정확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6.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

◆ **문의사항**

-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시 직접 수기로 기입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타이핑해도 되는가요.



◆ 답변사항

- 신청인 및 진술서 작성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타이핑을 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서 및 진술서 말미에 이름란 또는 서명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및 작성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 및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